

대한수학교육학회 정관 시행 세칙

제정 1991. 11. 2. 창립 총회 통과
개정 2002. 2. 23. 이사회 통과
개정 2004. 11. 5. 이사회 통과
개정 2009. 10. 24. 총회 통과
개정 2012. 6. 9. 총회 통과
개정 2014. 5. 24. 이사회 통과
개정 2016. 5. 20. 이사회 통과
개정 2018. 8. 11. 이사회 통과
개정 2019. 12. 13. 이사회 통과
개정 2025. 12. 5. 이사회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대한수학교육학회의 정관 제 42 조에 의거 법인의 운영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3.)

제2조(용어 및 호칭)

이 시행세칙에서의 용어와 호칭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관례에 따른다.(개정 2019.12.13.)

제2장 임원 및 조직

제3조(회장)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4조(이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법인이사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확대이사로 구분한다.

제5조(확대이사)

- ① 확대이사는 부회장, 직능이사 및 무임소이사로 구분한다.
- ② 법인이사는 확대이사를 겸한다.
- ③ 확대이사의 직명과 인원은 회장이 정하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부회장(약간명)
 2. 총무이사 1명
 3. 재무이사 1명
 4. 사업이사 1명
 5. 편집이사 2명
 6. 국제이사 2명
 7. 연구이사 2명
 8. 분과이사 2명
 9. 지부장(설립된 지부에 따름)
 10. 무임소이사(약간 명)
- ④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 ⑥ 분과이사는 각 분과의 위원장을 겸한다.

제6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본 학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확대이사회에 추천에 의해 추대하며,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③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대한 공헌을 한 인사로서 확대이사회에 추천에 의해 추대하며, 학회의 운영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확대이사회에 참여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협의와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7조(정회원이 아닌 회원의 총회 출석)

명예회원, 학생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9.12.13.)

제8조(확대이사회 기능)

확대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 및 제명
2.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3. 사업 계획과 예산, 사업 실적과 결산 심의
4. 입회비, 연회비, 발전기금(개정 2019.12.13.)
5. 3인 이상의 이사가 발의한 안건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장 사무국

제9조(사무국 및 직원)

- ①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직원의 업무는 사무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비치 문서)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영구 보존한다.

1. 인사 관리 문서: 입회 원서, 회원 카드, 회원 명부, 임원 명부,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문서, 각종 위원회 위원 의 위촉 대장
2. 재무 관리 문서: 입회금 수납 원부, 회비 수납 원부, 찬조금 수납 원부, 발전기금 수납 원부, 재산 목록과 재산권에 관한 문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 회계 장부
3. 행정 관리 문서: 규정집,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4. 사업 관리 문서: 도서 및 학술 자료대장, 정관 제4조에 따른 각종 사업에 대한 기록

제11조(문서 기록)

문서 기록 사항은 변동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수정 또는 누가 기록한다.

제12조(규정집)

- ① 규정집에는 정관, 정관 시행 세칙 및 제 규정을 수록한다.
- ② 규정집은 그 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 간행한다.

제13조(의사록)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2. 재적자 수와 출석자 수(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출석자 명단)
 3. 의사 진행 경과 및 의결 결과
 4. 의장을 포함한 출석자 대표 5인의 서명
 5. 감사의 기명, 날인
- ② 각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운영경비)

- ① 본 학회의 운영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보조금, 발전기금, 기타 수입금 및 그 이자 등으로 조달한다.(개정 2019.12.13.)
- ② 입회비와 각종 회비의 금액은 확대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재산 목록 및 회계 장부)

- ① 재산 목록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표시
 2. 취득년월일 및 취득원인(구입 가격, 기증자, 기증의 경위 등)
 3. 재산권 등에 관한 문서의 표시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회계 장부는 복식 부기 방법에 따라 정리한다.

제16조(입회비 및 연회비 수납 원부)

- ① 입회금 및 회비 징수 원부는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별로 작성한다(개정 2019.12.13.)
- ② 징수 원부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번호, 성명
 2. 입회금액
 3. 연도별 회비액(개정 2019.12.13.)

제17조(발전 기금)

- ① 본 학회의 발전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원의 성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은 구좌 당 일십만 원으로 한다.
- ② 발전기금을 누적하여 20구좌 이상 낸 회원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발전기금을 누적하여 10구좌 이상 내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회원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명예(공로)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신설 2018.8.11.)

제6장 사업

제18조(정기 학술연구발표대회 및 세미나)

- ①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정기 연구발표대회를 2회, 세미나를 2회 개최한다.
- ② 정기 연구발표대회 및 세미나의 개최일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12.13.)
- ③ 정기 연구발표대회 및 세미나의 개최일시, 장소는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9.12.13.)

제19조(학회지)

- ① 정관 제4조 제3항에 의한 학회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교육학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2. 학교수학 (School Mathematics)
- ② 각 학회지에는 국문 또는 영문에 의한 연구 논문과 해설 논문 등을 게재한다.
- ③ 각 학회지의 연간 간행 횟수와 시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르되,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1. 수학교육학 연구: 연 4회 간행 (2월, 5월, 8월, 11월)
 2. 학교수학: 연 4회 간행 (3월, 6월, 9월, 12월)

제20조(뉴스회보)

- ① 대한수학교육학회 뉴스회보의 명칭은 '수학교육뉴스회보'로 한다.
- ② 뉴스회보는 연 2회(5월, 11월) 간행한다.(개정 2019.12.13.)

제7장 임원의 선거

제21조(피선거권과 선거권)

- ① 선거 공고 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년 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회비를 2년 이상 지연 없이 납부한 정회원만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 5.)
- ② 선거 공고 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3년 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회장을 제외한 법인이사에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 5.)
- ③ 선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2년 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회비를 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한 정회원만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2025.12. 5.)

제22조(회장 선거관리위원회)

- ① 정관 제13조 ①항 및 제14조 ②항에 따른 선거 관리를 위하여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6. 5. 20.)(개정 2019.12.13.)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7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확대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총무이사를 제외한 위원 중 확대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9.12.13.)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⑥ 선거관리위원은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신설 2016. 5. 20.)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 1. 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 등록, 서류 심사에 관한 사항
 - 2. 회장 입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공고 및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 4. 당선자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 5.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회장 또는 확대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

-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후보등록 신청서와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 마감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제25조(선거방법)

- ① 선거방법은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2.13.)
- ② 본회의 회장은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로 정한다.
- ③ 입후보자 중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최고 연장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④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⑤ 투표용지 등은 전자투표 마감 시한으로부터 늦어도 5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일시를 사전에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 ⑦ 입후보자 또는 그 추천인단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 ⑧ 개표는 늦어도 회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26조(전자투표의 유예)(신설 2019.12.13.)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건이 미비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투표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우편투표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본회에서 우송한 용지와 반송봉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9.12.13.)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 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28조(법인이사 및 감사의 선거)

- ① 법인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은 법인이사 후보를 총회에 제청할 수 있다.

제8장 지부

제29조(지부의 회원)

지부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당해 지역 소재 근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지부의 운영)

지부는 지부의 회칙에 의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31조(지부의 의무)

- ① 지부는 본 학회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지부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지부의 회원 수와 임원의 변동 사항과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부장은 확대이사로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9장 위원회

제3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궐위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장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편집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논문 투고 및 심사과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4.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모든 심의 결과를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① 분과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② 분과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궐위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제 2019. 12. 13.)

제3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연구 집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는 위원회의 명칭과 관장 업무, 활동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활동 기간이 끝나면 활동 내용을 회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회장이 위원장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활동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3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회원들의 연구윤리 준수를 심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 본 세칙은 개정정관과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본 세칙은 2009년 10월 24부터 시행한다.
- 본 세칙은 201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세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세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세칙은 201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세칙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 세칙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